

# 과대포장 사전 예방하는 『과대포장 알리미』 서비스 안내문

## □ 서비스 개요

- (신청대상) 공단과 MOU를 체결한 협회의 '25년 신규 가입 회원사
  - ※ 신규 사업장 물량이 저조할 경우 기존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
- (신청기간) '25년 12월까지
  - ※ 신청 사업장의 연내 컨설팅 실시가 어려운 경우 '26년 연장 실시
- (신청방법) 상생누리([바로가기](https://www.winwinnuri.or.kr/))를 통해 컨설팅 신청 수시 접수
  - 상생누리(<https://www.winwinnuri.or.kr/>) > 동반성장 프로그램 > 프로그램 검색 > 과대포장 알리미 > 신청
- (주요내용)
  - 대상 업체(또는 담당자)에게 1: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

< 교육 절차 >

| 제도 안내     |
|-----------|
| · 과대포장 제도 |
| · 재포장 제도  |



| 자가 측정 방법 교육 |
|-------------|
| · 간이측정방법 고시 |



| 검사신청 등 시스템 사용법 교육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포장검사 시스템 사용 방법        |
| · 포장검사 내가 해보기 서비스 사용 방법 |

## □ 추진 절차

| 구분       |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회원사 → 공단 | · 「과대포장 알리미」서비스 신청(상생누리)      |
| ↓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단       | · 신청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조직 배분         |
| ↓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단 ↔ 회원사 | · 「과대포장 알리미」서비스 신청 일정 조정 후 방문 |

## □ 요청 사항

- 관련 내용 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알림